

2023 년도

장학생 신청 안내서



공익 재단 법인 오사카부 육영회

우 534-0026 오사카시 미야코지마구 아미지마초 6-20
오사카 사학 회관 2 층
업무 시간 평일 9:00~17:30



문의처

선정 대출과

TEL	06 - 6357 - 6272
FAX	06 - 6358 - 3053

홈페이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오사카부 육영회

(주) 다른 전화 번호로 걸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주) 2023 년도 예약 장학생 대출 예정자 중에서 ‘진학 신고’ · ‘장학 자금 차용 증서’를 학교에 제출한 분은 2023 년도 장학생으로 최종 선정되므로 이번 장학생 모집에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미 장학 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분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제도의 개요

학교 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이고 배움에 대한 열의가 강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여 학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사카부 육영회 장학금은 무이자입니다.

2

신청 자격

1. 학교 교육법에 따른 다음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일 것
(1) 고등학교(중등 교육 학교 후기 과정 및 특별 지원 학교 고등부 포함), 고등 전문 학교
(2) 전수 학교의 고등 과정(단, 수업 연한 1 년 이상의 학과)
2. 보호자(부모 등)가 오사카부 내에 주소가 있을 것

※보호자에 대해

민법 개정예에 따라 2022 년 4 월 1 일부터 성년 연령이 18 세로 낮춰졌습니다.

학생이 성년 연령에 도달한 경우는 ‘보호자’를 ‘성년 연령에 도달하는 날 이전의 날에 학생의 보호자(부모 등)였던 자’로 바꿔 읽어 주십시오. (신청 관련 서류 모두)

주) 보호자란 민법에 따른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을 말하며, 보호자가 없을 경우는 학생의 생계를 뒷받침하고 동시에 학자금을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 보호자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의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체류 자격이 필요합니다.

【체류 자격】

- 영주자
- 일본인의 배우자 등
- 영주자의 배우자 등
- 정주자(※)

(※)정주자에 대해서는 훗날 일본에 영주할 의사가 없는 분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3. 보호자에 대해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득 판정액이 다음과 같을 것

(※2022 년도 주민세 과세 표준액 등에 따른 보호자 합산액)

【계산식】

시정촌민세 과세 표준액×6%-시정촌민세 조정 공제액=소득 판정액

※ 정령 지정 도시에 시민세를 납세하고 있는 경우는 ‘조정 공제액’에 3/4 을 곱한 금액입니다.

※ 1 월 1 일~4 월 1 일 출생으로 부양 공제 적용이 같은 학년의 4 월 2 일~12 월 31 일 출생 학생보다 1 년 늦어지는 자의 경우는 보호자 중 어느 한쪽은 ‘(과세 표준액-33 만 엔)×6%-시정촌민세 조정 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학생 본인이 2006 년 1 월 2 일~4 월 1 일 출생이고 보호자 중 어느 한쪽에게 부양받는 자가 해당합니다.)

(*과세 표준액, 조정 공제액의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신청서 A 표 뒷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재학 중인 학교	소득 판정액	연간 수입 기준(※)
국공립	251,100 엔 미만	800 만 엔 미만
사립	347,100 엔 미만	1,000 만 엔 미만

(※) 연간 수입 기준은 보호자 중 어느 한쪽이 일하고 자녀 2 명(16 세 이상 19 세 미만 1 명, 16 세 미만 1 명)이 있는 4 인 세대의 경우입니다.

- ※1 지방세법 제 295 조 제 1 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 또는 동법 부칙 제 3 조의 3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동항의 시정촌민세 소득할을 부과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0 으로 합니다.
- ※2 과세 표준액이란 시정촌 · 도부현민세 소득할액 산정의 바탕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3 조정 공제란 2007 년에 국가에서 지방으로 세원이 이양됨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 주민세와 인적 공제의 차액에 기인하는 부담액을 조정하기 위한 공제를 말합니다.
- ※4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마이나 포털’에서 과세 표준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대출 한도액과 대출 시기

• 대출 한도액

재학 중인 학교	소득 판정액	연간 수입 기준	대출 한도액(연간 금액) [아래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금액(1 만 엔 단위)]
국공립 사립	251,100 엔 미만	800 만 엔 미만	수업료 실질 부담액(※1)+기타 교육비 10 만 엔 (수업료 실질 부담액(※1)이 무상인 경우는 한도액은 10 만 엔입니다.)
사립	251,100 엔 이상 347,100 엔 미만	800 만 엔 이상 1,000 만 엔 미만	수업료 실질 부담액(※1) (주) 24 만 엔을 상한(※2)

- (※1) 수업료 실질 부담액이란 각 학교의 수업료 연간 금액에서 국가의 취학 지원금이나 오사카부 수업료 지원 보조금, 학교의 독자적인 감면 등을 차감한 실질적인 수업료 부담액을 말합니다.
- (※2) 수업료 실질 부담액이 24 만 엔을 밑도는 경우는 그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오사카부 내의 사립 고등학교 등에 진학하는 학생 본인을 포함해 2 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세대로 소득 판정액(보호자 합산)이 251,100 엔 이상에 해당하여 오사카부 수업료 지원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대출 한도액이 다르거나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를 참조)
- (※3) 오사카부 사립 고등학생 등 취학 지원 추진교에 재학 중인 경우, “수업료 지원 보조금” 신청 상황 확인을 통해 부양하는 자녀의 인원수가 확정될 때까지는 자녀의 인원수를 1 명으로 대출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대출 초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과 대출분에 대해서는 상환해야 합니다.

• 대출 시기

대출 시기	제 1 회	제 2 회	제 3 회
대출일	7 월 10 일	10 월 11 일	1 월 30 일

- ※ 대출액에 따라서는 제 2 회, 제 3 회 대출이 있습니다. (20 만 엔 이하인 경우는 제 1 회만 대출됩니다.)
- ※ 2 년째부터의 제 1 회째 대출일은 5 월 30 일입니다.
- ※ 대출일이 금융 기관의 비영업일에 해당할 때는 다음 영업일입니다.
- ※ 대출 기간은 재학 중인 학교의 정규 최단 수업 기간입니다.

제출 서류	① 장학생 신청서 ② 보호자 수입에 관한 증명서 (신청서 C 표와 A 표 뒷면의 견본을 참조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③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주민표 (신청서 C 표 뒷면 [중요] 【주민표 제출 주의 사항】을 잘 확인한 후 제출해 주십시오.) ④ 학생 본인 명의 통장 또는 현금 카드 등의 사본 (신청서 B 표와 그 뒷면의 견본을 참조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⑤ 장학 자금 차용 증서 ※ 각자 자필로 서명하고 각자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 차용인(학생 본인)과 연대 보증인, 보호자의 필적이 동일한 경우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장애나 질병, 부상 등으로 서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대필할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⑥ 연대 보증인(보호자)의 인감 등록 증명서 (원본으로 육영회에 제출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와 인감 등록 증명서의 주소가 다를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의 부족이나 미비점이 있는 경우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와 주민표의 주소가 다를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	학교가 지정하는 기일(기한 엄수) 【학교 제출 기한: 월 일 ()】
제출처	재학 중인 고등학교 등

5

채택 여부 결정 통지

1. 채택 여부 결정 통지는 6월 하순에 학교장을 통해 신청자(학생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2. 선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분은 육영회 소정의 장학생 원표(선정 통지 시에 교부)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6

장학 자금 대출

1. 장학 자금은 장학생 본인의 예저금 계좌로 이체합니다.
2. 2년째부터 매년 4월에 학교를 통해 장학생 자격을 확인합니다.
확인한 결과, 장학 자금 대출을 중지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3. 매년도별 보호자의 소득 상황을 확인하여 당해 연도의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소득 상황에 따라서는 장학 자금 대출을 중지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상황을 확인한 결과, 대출 초과가 발생한 경우는 상환해야 합니다.
4. 수업료를 체납하거나 장학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명된 경우는 장학 자금 대출을 중지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7

대출 결정 후 신고

유급, 휴학, 퇴학, 전학 및 연대 보증인의 변경 또는 신고 사항 등에 변경(이동)이 발생한 경우는 학교를 통해 오사카부 육영회에 신고해 주십시오.

또한 변경(이동) 신고를 게을리했을 때는 장학금 대출을 중지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8

대출 총액 결정 통지

장학 자금을 대출받은 장학생에 대해 장학 자금 대출이 종료되었을 때 또는 장학 자금 대출을 폐지했을 때는 지금까지 대출한 금액 및 시기를 학교장을 통해 장학생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았을 때는 즉시 상환 계좌 신청서를 학교장을 경유하여 오사카부 육영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학금은 대출금입니다. 졸업 후(대출 종료 후)에는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금은 후배를 위한 장학금이 되므로 확실하게 상환해 주십시오.

1. 장학금 상환은 졸업 후 6 개월이 지나고 나서 정해진 금액을 차용인(학생 본인)의 예저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 졸업 이외의 사유로 1 월 1 일부터 5 월 31 일까지 퇴학 등의 이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대출이 종료되는 경우는 그해 10 월, 6 월 1 일 이후에 대출이 종료되는 경우는 다음 해 10 월부터 상환이 시작됩니다.

2. 원칙적으로 매월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 월간 금액은 대출 총액에 따라 다릅니다. 상환 총액을 상환 연간 금액으로 나누면 대략적인 상환 연수가 나옵니다.

상환 총액(대출 총액)		상환 월간 금액	상환 연간 금액
	1,440,000 엔 이하	8,000 엔	96,000 엔
1,440,000 엔 초과	1,620,000 엔 이하	9,000 엔	108,000 엔
1,620,000 엔 초과	1,800,000 엔 이하	10,000 엔	120,000 엔
이후 대출액이 18 만 엔 늘어날 때마다 상환 월간 금액 1,000 엔(연간 금액 12,000 엔)이 가산됩니다.			

3.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약속대로 상환이 어려울 경우는 반드시 오사카부 육영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연락하지 않고 체납이 지속될 경우는 체납액에 대해 체납 기간에 따라 연이율 8. 9%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상환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으면서 상환하지 않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강제 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정보 취급에 대해서는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고 동시에 적정하게 취급하며,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감독을 실시합니다.
2. 성명, 주소, 연대 보증인의 인감 등록 증명서, 소득 상황, 예저금 계좌, 계좌 명의 등의 개인 정보는 장학생 선정 심사, 장학금 이체 사무 및 장학금 상환 사무를 위해 이용합니다.
3. 상환자가 상환 기간 중에 차용인, 연대 보증인의 주소 등의 변경 신고를 게을리하여 청구 통지서 등을 송부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오사카부를 통해 주소지의 시구청촌에 주민표 등을 청구하여 주소 확인 조사를 합니다.

1. 장학금 대출 결정 후에 허위 신청 등이 판명된 경우는 대출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부적절한 사용이 판명된 경우는 대출 금액 전액을 일괄 상환해야 합니다.
3. 신청 서류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취학 지원금 등의 제도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육영회 장학금 대출 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사카부 육영회의 알림이나 최신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장학금 상환 지원 제도(대리 상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도의 개요는 오사카부 육영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